

제4장 이용계약

제1조 (급여계약 및 목적 등)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< 신설 2019.6.12.>

-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(장기요양 급여계약) 항목 <신설 2019.6.12.> 신설항목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06.12>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 -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
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3.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
 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2026년 월 이용료(비용부담액)

2026년도 본인부담금 조건표(주간보호)/특례 120%적용시										
	2등급(1일본인부담금)	식재료비	간식	소계(1일)	일수	본인부담금(1개월)	한도초과일수	한도초과금액	한도초과금액	총계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15%)	9,690	5,000	1,000	15,690	30	470,700	-	0	0	470,7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9%)	5,820	5,000	1,000	11,820	30	354,600	-	0	0	354,6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6%)	3,880	5,000	1,000	9,880	30	296,400	-	0	0	296,4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0%)	-	5,000	1,000	6,000	30	180,000	-	0	0	180,000
										-
3등급(1일본인부담금)										-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15%)	8,950	5,000	1,000	14,950	30	448,500	-	0	0	448,5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9%)	5,370	5,000	1,000	11,370	30	341,100	-	0	0	341,1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6%)	3,580	5,000	1,000	9,580	30	287,400	-	0	0	287,4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0%)	-	5,000	1,000	6,000	30	180,000	-	0	0	180,000
										-
4등급(1일본인부담금)										-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15%)	8,710	5,000	1,000	14,710	29	426,590	1	56000	56,000	482,59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9%)	5,220	5,000	1,000	11,220	29	325,380	1	56000	56,000	381,38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6%)	3,480	5,000	1,000	9,480	29	274,920	1	56000	56,000	330,92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0%)	-	5,000	1,000	6,000	29	174,000	1	56000	56,000	230,000
										-
5등급(1일본인부담금)										-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15%)	8,460	5,000	1,000	14,460	25	361,500	1	56000	56,000	417,5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9%)	5,080	5,000	1,000	11,080	25	277,000	1	56000	56,000	333,0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6%)	3,380	5,000	1,000	9,380	25	234,500	1	56000	56,000	290,5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0%)	-	5,000	1,000	6,000	25	150,000	1	56000	56,000	206,000
										-
인지등급(1일본인부담금)										-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15%)	8,450	5,000	1,000	14,450	12	173,400	14	30000	420,000	593,4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9%)	5,080	5,000	1,000	11,080	12	132,960	14	30000	420,000	552,96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6%)	3,380	5,000	1,000	9,380	12	112,560	14	30000	420,000	532,56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(0%)	-	5,000	1,000	6,000	12	72,000	14	30000	420,000	492,000